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 등〉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56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6. 28.
3. 회부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 교육·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청렴교육원 설치(안 제23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부패방지·기업윤리 교육 및 정책 수립, 정책연구, 전문 인력 양성 등 반부패·청렴교육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청렴교육원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 m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 ① 부패방지과 시민의 권익향상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청렴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청렴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제2조제3호다목을 포함한다),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2.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 지원 3. 부패방지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u>4. 부패방지 교육에 필요한 연구</u> <u>· 개발 및 조사</u> <u>5. 부패방지교육 관련 국제협력</u> <u>사업</u> <u>6. 그 밖에 국가청렴교육원의</u> <u>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u> <u>필요한 사업</u> <u>③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u> <u>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수</u> <u>행하기 위하여 국가청렴교육원</u> <u>하부조직으로 연구센터를 둘</u> <u>수 있다.</u> <u>④ 국가청렴교육원의 조직, 공</u> <u>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u>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	--

□ 현행법 제12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을 두고 있으며, 제81조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 21. (생략)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연수원(2과, 25인 이내)을 두어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청렴집합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연수원을 두어 청렴교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여 청렴집합교육에
대한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청렴연수원 집합교육(원내·방문) 수요 및 교육실적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교육수요(명)	125,585	117,778	237,486	182,803	241,835	905,487
교육실적(명)	24,663	43,698	88,411	81,119	67,821	305,712
수용률(%)	19.64%	37.10%	37.23%	44.38%	28.04%	33.76%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상징되는 민원대표 기관으로서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부패 및 공익신고 영역에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채용비리 조사 등 조사기구로서의 역할
또한 다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확대 연혁 >

일자	주요내용
20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통합
2011. 9. 30.	공익신고 제도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2016.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제도 신설 - 「청탁금지법」 제정
2019. 10. 1.	다수기관복합민원 안내·상담 및 관계기관 협의 제도 신설 -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4. 2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제도 신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2021. 7. 27.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신설 -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타 국가의 청렴 교육기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부패방지위원회(MACC) 산하에 별도로 반부패 아카데미(Malasia Anti-Corruption Academy : MACA, 4개 학부 4센터 1국, 70명)을 두고 반부패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의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ICAC)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 CPIB)의 경우 조직 내에 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 중임.

□ 개정안은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를 통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청렴집합교육 및 각종 법정 의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청렴교육원 하부조직으로 연구개발센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청렴에 대한 높아지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고, 국가청렴도의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 청렴교육 확대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국가청렴교육원 하부조직으로 연구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 교육원 입법례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주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연구개발 조직 운영 현황 >

소속	기관명	교육기획 (연구개발) 조직	근거규정
인사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스마트개발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안부	국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연구개발센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연구개발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개정안은 국가청렴교육원을 두는 경우 그 기관장을 정무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타 교육기관 기관장 직급을 고려할 때 이를 정무직이 아닌 고위공무원으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사혁신처 지정 21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 12개 기관(57%)이 기관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두고 있음.

<주요 교육기관의 조직구성 및 기관장 직급>

연번	부처명	교육기관명	조직구성	정원	기관장 직급	정무직	고위직
1	인사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3부 1센터 7과	151	차관급	1	4
2	외교부	국립외교원	7부 5센터 7과	99	차관급	1	7
3	법무부	법무연수원	2부 1분원 7과	130	차관급	1	6
4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부 6과	104	고위직(가급)	0	3
5	통일부	통일교육원	2부 6과	68	고위직(가급)	0	3
6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3부 5센터	47	고위직(나급)	0	1
7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과 1센터	56	고위직(나급)	0	1
8	행안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과	44	고위직(나급)	0	1
9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과	33	고위직(나급)	0	1
10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3과	73	고위직(나급)	0	1
11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과	35	고위직(나급)	0	1
12	농림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3과	41	고위직(나급)	0	1
13	산림청	산림교육원	2과	31	고위직(나급)	0	1
14	과기정통부	우정공무원교육원	3과	91	고위직(나급)	0	1
15	통계청	통계교육원	2과	32	고위직(나급)	0	1
16	권익위	청렴연수원	2과	25	부이사관	0	0
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3과	31	부이사관	0	0
18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과	17	부이사관	0	0
19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과	26	부이사관	0	0
20	해수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과	25	서기관	0	0
21	조달청	조달교육원	1과	15	서기관	0	0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국가청렴교육원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두는 경우 1원 2부 1센터 7과, 정원 55명 규모로 조직을 편성 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4억 2,500만원, 2030년 65억 7,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22억 6,300만원 (연평균 64억 5,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청렴교육원 설치 (안 제23조의2)	3,810	3,732	3,806	3,882	3,959	19,188	3,838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안 제81조의3)	890	890	890	890	890	4,450	890
기업의 부패방지교육 지원(안 제81조의4)	1,025	1,025	1,025	1,025	1,025	5,125	1,025
국제협력 촉진 (안 제81조의5)	700	700	700	700	700	3,500	700
합 계	6,425	6,347	6,421	6,497	6,574	32,263	6,45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교육원 및 연구개발센터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부패방지 업무 교육·연구’외에 ‘권익구제 교육·업무’도 위원회의 업무에 명확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국가청렴교육원은 「정부조직법」 제4조²⁾에 따른 부속기관에 해당하며, 부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에 둘 수 있으므로 법률에 부속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국가청렴교육원장 직위는 타 교육기관과의 기관 규모, 기관장의 통솔범위 등 감안시, 정무직으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법률로 부속기관을 설치한 사례>

부처명	부속기관	근거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제67조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법 제2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원법 제19조의2

2)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2. 학교·기업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및 국제협력 촉진(안 제81조의3
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 개정안은 청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청렴교육원이 공직자등에
대한 청렴교육 외에도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
업무와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생략) ② <u>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u> ③ (생략) <u><신설></u>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u>제81조의3(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부패방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신 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부패방지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인력·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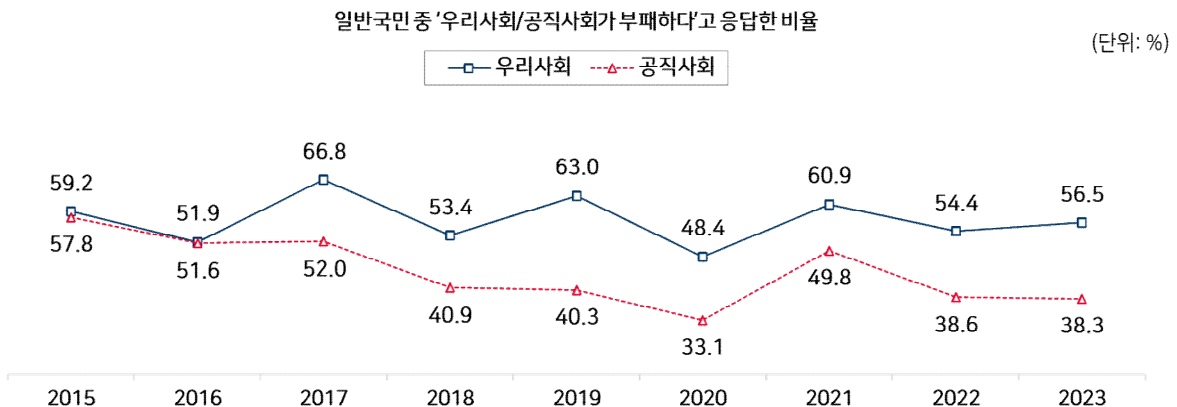
제81조의4(기업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 ① 위원회는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u>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생 략)</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81조의5(국제협력의 촉진) 위원회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외국의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 부패방지 관련 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1.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u> <u>2.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류 및 연수</u> <u>3.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활동 참가</u> <u>4.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81조의6(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현행 제81조의3과 같음)</u>
--	--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2023년 기준으로 전세계 180개국 중 32위 (63점) 수준에 불과함.

○ 반부패 법령 제정 및 국정과제 추진 등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통하여 국가청렴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 경제 규모(2023년 기준 11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

- 지난 10여년 간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을 포괄한 부패 인식도는 정체 상태임.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결과」 (2023)

□ 현행법상 강행규정인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교육과는 다르게,³⁾

3)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은 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은 선언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⁵⁾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FTA 협상에 반부패 조항 포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신규 다자간 협상 확대 및 한국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에 따른 반부패·옴부즈만 해외기관의 교류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⁶⁾

□ 이에 개정안은 국가청렴교육원이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정책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부패방지과 관련한 국제교류 협력의 근거를 명시해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1조의5제1항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경우 기업 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 법령 관련

4)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5)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MOU 건수 : '22년 7건 → '23년 8건 → '24년 9건

교류 요청 건수 : '22년 8회 → '23년 11회 → '24년 8월 기준 25회

적용범위, 위반행위 및 제재처분 등에 대한 민간기업의 교육 지원 요청은 있으나, 민간기업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 공직자등에 대한 부패방지교육과 같은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사적영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안 제81조의5 국제협력의 촉진 조항에도 부패방지 외에 권익구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